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Question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?

Answer

-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·도용이 용이하나,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 받아 침해·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- 유사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(기본디자인)에 물품의 형상, 색채,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,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(디자인보호법 제7조)
- 출원인은 출원 시에 단독,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, 그 후에도 자진해서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,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유사디자인권의 내용
 -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·소멸됩니다.
 - 단, 유사디자인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 - 또한 유사디자인은 독자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등록취소나 등록무효가 될 수 있고,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소멸할 수도 있으며, 독자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도 가능하다.

Question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?

Answer

-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,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.
-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.(디자인보호법 제13조)
-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.(디자인보호법 제13조 3항)
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임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
 -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
 - 심사, 심판,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
 -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
 -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